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윤일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93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4.

발의자 : 윤일규 · 안호영 · 김상희

위성곤 · 김해영 · 우원식

노웅래 · 강훈식 · 김병기

어기구 · 소병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(이하 “전공의 법”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, 수련규칙 이행 여부,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(이하 “수련환경평가”라 함)를 실시하여야 함.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.

이에 전공의법을 개정하여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, 수련 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함(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).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공표 시기, 내용,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수련환경평가) ① ~ ⑤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4조(수련환경평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⑦ 제6항에 따른 공표 시기, 내용,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